

조례안	수정안(검토의견)	검토결과
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조항 : 제9조(지역아동센터 위원회의 구성)제3항 ⇒ 지역아동센터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.	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조항 : 제9조(지역아동센터 위원회의 구성)제3항 ⇒ 「양성평등기본법」제21조 제2항에 따라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라는 문구를 추가할 것을 제안함	<input type="checkbox"/> 검토의견 미반영 ⇒ 상위법에 규정되어 당연 적용되는 사항이므로 미반영함.

라. 기 타

- 1) 입법예고: 고성군공고 제2023-1541호
 - 가) 예고기간: 2023. 10. 12.(목) ~ 2023. 11. 1.(수)
 - 나) 예고결과: 의견없음
- 2)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- 3) 부패영향평가: 해당사항 없음
- 4) 신·구조문대비표: 붙임
- 5)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: 붙임

5. 전문위원 검토요지

- 상설 운영 중인 지역아동센터위원회를 비상설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.
- 조례안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.
 - 지역아동센터 위원회의 구성(안 제 9조)
 - 위원회 구성을 임의규정으로 하고 안전 발생 시 구성하여 심의·의결 후 해산토록 하는 규정은 위원회 비상설화 근거로 적정해 보임.
 - 위원을 15명 이내에서 10명 이내로 구성토록 규정하여 비상설화에 따른 위원 구성을 간소화하였음.
 - ※ 군의회 추천 군의원 1명, 교육청 관계자 추천 대상에서 제외
 - 위원회 비상설화에 따라 불필요한 위원 임기에 관한 사항 삭제
 - 위원회의 운영(안 제11조), 해임·위촉 해제(안 제12조)
 - 위원회 비상설화에 따라 불필요한 위원회의 운영, 위원 해임·위촉에 관한 사항을 삭제 및 정비함.

- 본 개정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, 위원회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위원회를 비상설화 하고 이에 따른 위원회 관련 내용을 정비하는 것은 적절해 보임.

- 고성군이 초등학교의 정규학습시간 외에 보호자가 안전하게 돌봄 아동을 보호하기 어려운 경우를 지원하기 위해 “온종일 돌봄” 을 운영하고 있고, 「고성군 온종일 돌봄에 관한 조례」에서도 지역아동센터를 돌봄시설로 정의하고 있음. 행정효율 제고와 돌봄시설의 종합적이고 유기적인 운영·관리를 위해 지역돌봄협의체의 지역아동센터위원회 대행에 대해서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청취할 필요성이 있을 것임.

6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(위원회 회의록 기재)

7. 토 론 : 없음.

8. 심사결과 : 2023. 11. 28. 원안가결